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 이양〉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5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 이양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8.
3. 회부연월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앙부처의 비지속적('16년 공모·선정 / '23년 공모·선정)이고 대도시 중심(서울 3, 부산 1)의 선정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전국 단위의 공모·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축소시켜 지방자치활성화를 저해함.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증대시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시장등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1항).

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3항).

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의4제4항).

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5항).

마. 시·도지사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7항).

바.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8항).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제4호의2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4호의2).

Ⅲ. 검토의견

1.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 이양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이에 맞춰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심의 절차, 지정권한 취소 등도 함께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 4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u>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u>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u>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u>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③ <u>시장등은</u>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u>시·도지사는</u>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u>행정안전부장관은</u>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⑥ (생략) ⑦ <u>행정안전부장관은</u>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 ----- ----- ----<u>시·도지사에게</u>----- -----. 1. ~ 5. (현행과 같음) ④ <u>시장등은</u>----- ----- ----- ----- ----- --<u>시·군·자치구</u>----- -----. ----- ----- ----- -----. ⑤ ----- -----<u>시·도지사는</u> 제7조제1항에 따른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 ⑥ (현행과 같음) ⑦ <u>시·도지사는</u> <u>시장등의</u>----- -----

현행	개정안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 -----.
⑧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u>는</u>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u>시·도지사와 시장등은</u> ----- ----- -----.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 ----- ----- -----

현행	개정안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u> 5. ~ 8. (생략) ② ·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제4조의4제1항),

이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의 타임스스퀘어,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이를 통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난 2016년에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옥외광고물과는 크기, 형태 등이 다른 8개소 20기의 다양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유표시구역 지정 이후 5년간('18년~'22년) 광고물 표시규제 완화 등 특례 13건 적용, 광고 매출액 1,577억원 발생, 공익광고 평균 45% 송출(4,400회)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방자체단체 공모 및 전문평가단 심사를 통해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 등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음.

< 제1기 자유표시구역 현황 및 운영성과 >



※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자유표시구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전국 단위의 공모·선정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협력 기회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 이양>

구분		<현 행>	<개정안>
지정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지정 신청	신청 주체	시·도지사	시장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절차	운영기본계획 작성 ↓ (의견청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운영기본계획 작성 ↓ (의견청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심의기구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
지정 취소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자유표시구역 지원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의 이양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법령에서는 옥외광고물 특례구역을 자유표시구역,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경관, 안전,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정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특례구역별로 지정주체, 심의기구, 설치기준 등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통한 광고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확대됨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과다할 경우,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지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빛 공해 등의 피해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옥외광고물법령상 광고물 특례구역 현황>

구분	자유표시구역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지정목적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한 옥외광고산업 진흥, 지역경제·문화 활성화, 도시 랜드마크 조성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름다운 경관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지속적 유지·관리
법적근거	법 제4조의4	법 제3조, 제4조	법 제4조의3
지정신청	시·도지사	시장등 요청가능, 시도지사 직권지정 (시군구 의견청취)	수요조사 가능, 시장등 직권지정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지정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심의기구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광고물등 설치기준	시·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강화)	시장등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함

또한,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제4조의4제2항)¹⁾,

개정안은 ‘별도의 기준’이 반영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²⁾의 심의주체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음.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등의 광고물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광고물등과 도시경관의 조화, 디자인 개선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유표시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마련된 별도의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경우 현행과 같이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4.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사항(제7조의2제1항)
1. <u>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2. <u>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3. <u>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u> 4. <u>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u>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u>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6. <u>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u>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제7조제1항)
1. <u>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u> 2. <u>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u>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는 제도 운영 초기단계인 관계로 광고 인프라가 우수한 대도시권 위주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며, 각자의 기준으로 지정·운영할 경우 광고산업의 진흥보다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서는 현재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서울·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만 선정되어 지역의 창의적 발전이 저해되므로 지방자치 활성화 기여 등을 고려하여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수원특례시의 경우 권한 이양시 시·도간 다른 지정기준 적용으로 인해 광고물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현행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지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36

참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현황

□ 추진 배경

-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자유표시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기술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테스트베드 지역



□ 자유표시구역 지정 현황(총 4개소)

- (제1기) '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원 최초 지정, '18년부터 운영
※ 5년간('18.~'22년) 운영성과 : 새로운 디지털 광고 중심지 형성, 총 1,577억원 매출성과, 국내 디지털 기술력 홍보(Wave 영상 등 해외언론 호평) 등
- (제2기) '23년 지자체 공모, 전문평가단 심사를 통해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 명동관광특구, 부산 해운대 등 3개소 신규 지정



□ 향후 계획

- 제2기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설치 및 운영 : '24. 11월~
- 제3기 자유표시구역 신규 지정 추진 : '26년 상반기